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23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에 관한 사항(제5조)
- 나.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제7조)
- 다.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제14조)
- 라. 조례의 용어 통일, 오타자 및 띄어쓰기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연구활동경비로써”를 “연구활동경비로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회의를 시작”을 “개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을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부터 제10항(종전의 제8항)까지 중 “의원연구단체”를 각각 “연구단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의장을 제외한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

2. 위촉직 위원: 입법 및 정책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

간전문가 2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연구활동비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 환수 시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 의원에게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하며, 연구단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 “활동계획, 경비”를 “활동계획, 경비”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을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을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심의**”를 “**심사**”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의 공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임실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생 략)</p> <p>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u>연구활동경비</u>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p> <p>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입실균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연구활동경비</u> <u>로서</u> ----- -----.</p> <p>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1. 당연직 위원: 의장을 제외한 입실균의회 의원 전원</p> <p>2. 위촉직 위원: 입법 및 정책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p>

<신 설>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민간전문가 2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 개회-----
-----.

⑥ -----
-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

-----.

⑧ ----- 연
구단체 -----
-----.

⑨ -----
---- 연구단체-----

-----.

⑩ -----
- 연구단체-----

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연구활동비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 환수 시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 의원에게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하며, 연구단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적격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② (생략)

제8조(심사결과의 알림) -----

활동계획, 경비 -----
----- 별지 제4호서식 -----
식-----
----- 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 (생 략)

③ -----
- 심사-----
-----.

제14조(연구활동 결과의 공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임실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